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1회 구직급여 지급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5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1회 구직급여 지급	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0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1회 구직급여 지급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¹⁾이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²⁾ 제40조제1항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생략)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u>경우 <단서 신설></u>	가. ----- ----- <u>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u>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중 제3호는 이직사유가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³⁾

그리고 제58조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되는 이직사유로서 피보험자가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제1호)와 ②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음.⁴⁾

3)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6. (생략)

② (생략)

4)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제58조제2호)는 본인 의사에 따른 보험사고라고 볼 수 있는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제한 사유로 봄.

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해 경력 설계 전환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이직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급여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서는 근로조건의 악화,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

권고 등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외관상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일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보호하고 있음.

둘째, 현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⁵⁾ 청년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발적 이직을 한 청년의 취업기회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소요액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비록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음.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2020년 말 3조 8,666억원에서 2025년 말 1조 7,27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0.1배로 「고용보험법」 제84조에서 정하는 1.5배 이상 2

5)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법 제6조)와 구직촉진수당(법 제7조)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I 유형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소득, 재산 등을 불문하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배 미만의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표]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계정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수입	199,831	187,371	185,117	191,862	203,045
	지출	210,463	180,507	170,407	186,253	209,183
	수지	△ 10,631	6,864	14,709	5,609	△ 6,138
	적립금	55,828	62,611	77,319	82,918	76,758
실업급여 계정	수입	148,141	135,675	143,879	149,105	156,823
	지출	144,138	141,325	143,307	151,541	174,623
	수지	4,003	△ 5,650	573	△ 2,437	△ 17,799
	적립금	42,665	36,953	37,525	35,083	17,275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계 정	수입	51,691	51,696	41,238	42,757	46,222
	지출	66,325	39,182	27,101	34,711	34,560
	수지	△ 14,634	12,513	14,137	8,046	11,662
	적립금	13,163	25,658	39,794	47,835	59,484

* 자료: 고용노동부

[표] 최근 10년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 (A)	58,557	62,858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1	174,623
	연말 적립금 (B)	49,371	57,958	55,201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17,275
	적립배율 (B/A)	0.8	0.9	0.7	0.4	0.3	0.3	0.3	0.3	0.2	0.1

* 자료: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참고로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6)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이들 중 62.7%가 첫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3개월이며, 현행법에 따른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구직급여 수급자 수, 34세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평균 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음.

[표]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구직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구 분		2025년	2026. 7월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	4,187,522	4,212,327
	구직급여 수급자 수	433,856	301,384

주: 고용보험 가입자수: 2025년은 12월말, 2026년은 7월말 기준, 상용근로자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수: 2025년은 연마감, 2026.7월은 1~7월 순수월누계 기준, 자영업자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표] 평균 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

(단위: 원, 일)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직급여일액	34세 이하	58,672	58,714	59,555	60,982	62,094
	전체	58,508	58,206	58,787	60,075	61,186
수급기간	34세 이하	142.9	140.4	138.5	140.2	140.8
	전체	159.1	157	154.5	156.4	158.7

주: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실 지급액 기준이며, 자영업자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6) 다만 이 조사에서는 15~29세를 '청년층'으로 보아 19~34세를 '청년'으로 보는 본 의안과는 차이가 있음.

넷째,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시장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고용유지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시 청년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층 고용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한 차례 실업을 겪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재취업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부담 주체인 노사와 함께 세부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 재취업 지원방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수급액, 수급기간 등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특성, 기업의 청년 채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재정안정성 등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8